

인천 서해구 석남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26. 7. 16.

석남2동 주민자치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규정에 따라 석남2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석남2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4조(운영원칙)

1.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의 의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민, 민·관의 협치를 통해 운영한다.
 - 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② 주민의 자발적·자율적 참여 운영 원칙
 - ③ 운영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원칙
 - ④ 권한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의 원칙
 - ⑤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이용배제 원칙

제5조(기능 및 권한)

1.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생활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②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③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기능 중 주민자치회에서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 ④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운영
 - ⑤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⑥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운영, 자치계획의 실행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 ⑦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 2. 수탁업무와 주민자치 업무 수행 중 발생 되는 수익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 1. 주민자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운영세칙 제4조의 원칙에 따라 제5조의 주민자치회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한다.
- 2.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 3.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정원) 위원인 정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 1. 위원의 자격은 조례 제7조에 따른다.
- 2. 조례 제7조제1항의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강사, 실비를 지급받는 자원 봉사자 등이 될 수 없다.
- 4. 조례 제20조에 의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위원의 선정 및 위촉은 조례 제8조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1. 위원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해촉된다.
-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로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발생시키거나 현저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단, 회의 개최3일 전에 서면으로 불참 사유를 제출하거나 경조사와 사고 및 천재지변은 예외로 한다.
 - ③ 범죄행위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소된 경우.

- ④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 ⑤ 정기회의에서 의결한 회비 납부의 의무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단, 소명의 기회를 주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원회의에서 재고할 수 있다.
 - ⑥ 위원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 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4. 위원직을 자진 사퇴 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원은 임기만료 및 해촉 시, 회비 및 모든 권한을 소멸한다.

제11조(임원의 구성)

1. 주민자치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① 회장 : 1명
 - ② 부회장 : 2명
 - ③ 사무국장 : 1명
 - ④ 감사 : 2명
 - ⑤ 간사 : 1명 (주민자치 회장이 임명한다)
 - ⑥ 재무 : 1명 (주민자치 회장이 임명한다)
 - ⑦ 분과별 분과위원장 : 각 1명
 - ⑧ 자문 : 직전 주민자치회장
 - ⑨ 고문 : 구의원(당연직)
2. 임원 이외에 추가 직위가 필요한 때에는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 둘 수 있다.
3. 인천 석남2동의 직전 주민자치회장은 자문으로, 구의원은 고문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구정 주 현안에 대하여 설명 및 의견청취 할 수 있다.

제11조의1(사무국의 운영)

1.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실무 지원
 - ② 주민총회 운영, 주민참여 관련 업무 지원
 - ③ 분과위원회 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 ④ 주민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무

3.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 주민자치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5.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임원선출 및 임무)

1. 회장, 부회장 : 조례 제9조에 의거 선출하며 다음의 업무를 한다.
 -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2. 감사 : 조례 제11조에 의거 선출하며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연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3. 간사 : 조례 제10조에 의거 임명 및 다음의 업무를 한다.
 - ① 주민자치회의 결정사항 보고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회의 결정 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한다.
 - ② 회장의 역할을 보조하며 주민자치회 실무 사항을 함께 수행한다.
4. 재무 : 예산, 회계, 출납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정기감사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5. 분과위원장 : 조례 제12조에 의거 선출 및 다음의 업무를 한다.
 - ① 분과운영 및 분과위원회를 총괄한다.
 - ② 매월 1회 분과회의를 한다.
 - ③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분과 총무를 둘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및 분과원)

1. 조례 제12조에 의거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3개의 분과를 둔다.

구분	분 과 명	업 무
1	교육문화체육분과	주민자치회 운영(문화교실, 헬스장)및 교육, 축제, 문화, 체육 등과 관련된 분과
2	도시환경(안전)재생분과	마을의 주거환경, 쓰레기문제 등 환경문제와 마을 안전에 관련한 분과
3	복지분과	마을 사회복지에 관련한 분과

2. 사직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분과 결원이 발생한 경우, 조례 제8조제6항1호에 의거 결원분과로 배치한다. 단, 특정분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분과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3. 주민자치회의 정원 외에 원활한 분과활동을 위하여 분과위원장은 분과원을 모집 할 수 있다.
 - ① 분과위원장의 권한으로 정원의 10명까지 분과원으로 모집 할 수 있다.
 - ② 분과원이 10명 초과시 자치회장의 권한으로 분과배치를 한다.
 - ③ “분과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정기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치회장의 위촉을 받는 날부터 활동 할 수 있다.
 - ④ 분과원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분과위원회 활동에 한하여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가진다.

제14조(서류보관 및 직인비치)

1.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보관한다.
 - ①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
 - ② 각종 회의에 따른 회의록
 - ③ 사업계획서
 - ④ 기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서류 및 문서
 - ⑤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생산된 문서는 공문서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고 보관·보존한다.
2. 주민자치회의 모든 문건 및 회의록을 포함한 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단, 공개문건 및 공개자료 제외)
3.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비치하고 대내외의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경우 사용하며 직인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3장 주민자치 회의

제15조(주민총회)

1. 주민총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원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주민자치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이며, 조례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을 수행한다.
3. 주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원은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
 - ① 주민총회와 관련한 기획, 홍보, 투표절차 등 총회 운영전반
 - ② 당일 참여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사전투표 절차 진행
4. 주민총회의 투표방식은 본투표, 사전투표, 전자투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1. 정기회의, 임원회의, 분과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구 분	일 정	비 고
정기회의	매월 셋째주 목요일	* 조례 제17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원회의	매월 둘째주 목요일	* 운영세칙 제10조 * 임원3분의2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분과회의	매월 첫째주 정기화	* 운영세칙 제10조 4항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신종감염병(코로나 등) 및 재난상황에 따라 정기화된 모든 회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17조(회비)

1.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 매월 5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단, 정기회의에서 회비를 가감할 수 있다.
2. 회비의 사용처 및 사용방법 등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운영세칙 제23조의 경조사비 등은 회비에서 집행한다.

제4장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제18조(자치계획수립)

1. 분과위원장은 다음연도 당해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2. 임원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3.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②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③ 월별 추진계획 및 평가계획
 - ④ 예산 조달 및 집행방법

- ⑤ 홍보 및 협업, 주민참여 및 다른 단체 협조사항 등
- 4.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5. 선정된 우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관 단체나 분과에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19조(회계연도)

- 1. 보조금 및 기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2. 회비는 자치위원 위촉일부터 위촉만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월1회로 한다.

제20조(재정)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보조금, 수입금, 수탁금 등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조금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 2. 수입금 :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문화교실, 헬스장 등을 포함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 부분
- 3. 수탁금 :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수탁 받은 사업비
- 4. 후원금(찬조금) :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 후원 받은 금액과 물품

제21조(재정관리)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 및 지출)

- 1. 주민자치회의 재정 관리 및 수강료 징수환불, 예산지출 등 회계처리는 재무가 담당한다.
- 2.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서에 지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다만 임원회의 결정으로 긴급하거나 30만원 이하의 경미한 지출의 경우 회장 승인하에 선집행 후 정기회의에서 보고 할 수 있다.
- 3. 지출품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출납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 4. 지출품의서 및 증빙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 편철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경조사비 등)

1. 위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출한다.
 - ① 위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경애사시 : 100,000원. 단, 회원당년 2회 지출한다.
 - ② 2년 이상 재직 위원의 사직 시 감사품 등 전달 : 100,000원
2. 행정복지센터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출한다.
 - ① 동장 및 일반직원의 경조사시 : 100,000원
 - ② 동장, 주무, 담당자 전출 시 축하 화분 전달
3. 석남2동 타 단체 경조사비는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 ① 타 주민자치회 및 단체행사 등에 대한 찬조금은 원칙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하나, 행사 추진 단체에서 석남2동 주민자치회에 찬조하였을 경우 그 금액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4조(결산) 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운영세칙은 정기회의 의결 시 즉시 발효되며 2026년 7월 16일부터 적용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조정) 이 운영세칙은 분과 및 임원회의의 숙의 과정을 거쳐 정기회의에서 의결,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3조(관례) 석남2동 운영세칙에 규약되지 않은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반 관례에 따른다.